

2023 인천문화재단 자기주도형 인천청년한달살기 신청안내서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이후의 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 2023년도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공통안내사항	03
II . 자기주도형 인천청년한달살기 신청안내	05
III . 자기주도형 인천청년한달살기 신청/제출서류	08
IV .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및 기타 안내	09

2023년도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공통안내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년 9월 25일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 작가의 문하생 등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예술인 지위와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성과 전파의 방해, 예술지원 사업에서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차별을 목적으로 한 명단 작성·공정 심사 방해를 금지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예술인과의 불공정한 계약 등 불공정행위와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금지합니다.

연습과 훈련을 포함한 창작, 실연, 기술지원 활동 등을 예술 활동이라 규정합니다. 예술교육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교육 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예술 활동·교육 업무의 지휘·감독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운영되며, 피해자 구제 및 시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를 설치해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건을 조사하며, 관계기관에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정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자 및 신청 단체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준수를 위해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근절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일괄 제출하며,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창작활동 다변화 지원

- 장기적인 배리어프리 환경 마련을 목표로 예술 창작 영역 내 장애인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지원합니다.
- 자막, 수어, 점자 발간 및 음성해설 지원 등 지원사업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행정업무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 모든 지원신청-지원금 교부-지원금 정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 사업 주체인 개인 혹은 단체에 따라 해당하는 아이디를 통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받고, **사업종료 후 1개월 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의 집행과 시기

- 2023년 11월~12월 중 **인천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선정된 사업의 경우, 국가재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업 변경이 가능하나, 지원사업 선정 및 교부 시점 당시의 사업 계획을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행 활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지원신청 제외 주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보유 개인의 경우 지원 가능)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 개인(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2022년도 지원 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개인
 - ※ 2022년도 지원 대상 결정 통보 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변경 및 사업 포기 건의 경우 제외
 - ※ 단, 문화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 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화예술지원사업 유형에 한정함
- 2022년도까지 사업지원을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1.31.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단체, 개인**
 - ※ 단, 시·도(문화재단)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문예진흥기금 및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교부된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소정 기한을 지나 지원신청 접수 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개인

■ 지원신청 불가 사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직접 지원 사업 및 다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 동일 여부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내용, 인적·물적 구성요소, 동일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예술 작품성이 희박하고 종교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

■ 지원신청 주의사항

- 저작권 관련 문제(표절 또는 모방)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수익금을 해당 지원 사업에 재투여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됨)







자기주도형 인천청년한달살기 사업 신청안내

■ 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금액(만원)
자기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관내에서 최소 7일, 최대 14일간 머물며 자기주도적 활동(활동 지원) - 최소 7일, 최대 14일 인천 내 숙박 - 한달살기 계획, 일정 작성(제출) -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전시 참여 2회 이상(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드테이블, 역량강화, 인천 내 전시, 공연 등(감상문 작성) - 개인 역량강화, 주민대상, 청년들과 함께, 씬 등 자율 프로젝트 진행 - 한달살기 기간의 경험을 반영한 창작물 제작 (자율양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정산 	최대 200

■ 지원신청 안내 - 공통 사항

1. 접수방법

접수방법	- 자기주도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p>- 접수기간 : 2023. 10. 23.(월) 09:00 ~ 2023. 10. 30.(월) 17:59 17:59을 넘으면 제출이 불가능하오니, 기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p> <p>- 지원신청서는 원본 손상 방지를 위해 PDF 파일 및 한글 파일 2가지로 제출바랍니다.</p> <p>-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p> <p>- 자기주도형을 준비하시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참고영상 (QR코드 / 인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p>				
	<table border="1"> <tr> <td>회원가입 안내</td> <td>지원신청 안내</td> </tr> <tr> <td></td> <td></td> </tr> </table>	회원가입 안내	지원신청 안내		
회원가입 안내	지원신청 안내				
					

2. 심의기준 및 절차

심의 기준 및 절차

- 2023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수행자(개인 및 단체 모두 해당)의 경우, 당해 연도 심의 개시 전까지 전년도 사업의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인천청년한달살기 심의기준

단계	평가항목 (주관)	항목 기준	배점	
1	행정심의(재단)	필수서류 제출 및 자격기준 부합 여부 검토	가/부	
2	자기주도형 심의기준	참여 의지(40)	인천청년한달레지던시 참여 의지 본인이 지역에 살고자 하는 이유	40
		이해도 및 계획(30)	레지던시의 이해도, 계획	30
		발전가능성 (30)	레지던시를 통한 창작 활동의 저변 확대 가능성	30

심의 발표

선정심의 진행 2023년 10월
선정결과 공고 2023년 11월 중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3. 기타사항 및 문의처

기타사항

- 자기주도형의 경우 교부·정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사용합니다.
- 지원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는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지원금 운영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진행 도중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해당 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향후 타 지원사업 심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 확정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선정 발표 전 진행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정 이후 주요 참여자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뒷자리(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 후원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 선정사업은 추후 사업수행 시 재단이 실시하는 참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인천청년한달살기 사업 선정자를 위한 교부신청 및 정산 설명회는 11월 내(예정)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선정 공고 시점에 정확한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청년문화팀

☎ 032-766-5978

- ※ 본 안내서를 상세히 살펴보신 후, 궁금한 사항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기주도형 인천청년한달살기 신청/제출서류 안내

지원내용	자기주도형	지원금 200만원 지원(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정산)
사업별 필수 내용	자기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내(11. 27. ~ 12. 11.) 최소 7일, 최대 14일 인천 내 숙박 · 한달살기 계획, 일정 작성(제출) ·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전시 참여 2회 이상(필수) ※ 라운드테이블, 역량강화, 인천 내 전시, 공연 등(감상문 작성) · 개인 역량강화, 주민대상, 청년들과 함께, 씬, 자유프로젝트 진행 · 한달살기 기간의 경험을 반영한 창작물 제작 (자율양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정산

구분	세부 내용	
신청자격	공통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983.10.17. 이후 2004.10.16. 이전 출생자)

제출서류	개인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연령 증빙자료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보는 삭제하여 제출
------	----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당시 계획한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 신청자 본인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지원금이 활용된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해당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형 지원신청서와 자기주도형 지원신청서를 구별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	--

1. 사업계획

연번	구분	참고사항
1	프로젝트명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기재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기재사항과 동일해야 합니다.
2	세부일정	- 본사업의 경우 2023. 11. 27. ~ 12. 11. 중 최소 7일, 최대 14일 까지 지원이 되므로, 기간을 조정하여 작성 해주세요
3	머무는 곳	- 인천 내 어느 곳에서 어떤 숙박에서 머물지 작성 해주세요.
4	자기 소개	- 본인 활동에 대한 소개 등 신청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소개나 설명을 작성 해 주세요.
5	한달살기 활동 계획	- 어떤 일정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천에서 살아볼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5	성과/의의	- 사업을 통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치 혹은 비수치화된 성과를 기재합니다.

※ 기타사항은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 유의사항 확인

2. 예산계획

- 예산 일반사항

-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작성합니다. (필수사항)
- 아래 <사업예산참고표>를 참고해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항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비 산출근거는 사전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체부담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체부담금(선택)이 있을 시 100% 정산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 시' 총사업비와 지원 선정 후 '교부신청 시' 총사업비에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차년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취득성 항목은 10만원 이하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기한을 연내로 설정해야 지출 가능)
-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액 또한 지원금 항목 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편성하지 않을 경우,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구분	항목	적용 내용
집행 가능	일반수용비>사례비	자문료 등 모든 인건비성 사례비
	일반수용비>재료비	본인 작업 등 레지던시 기간 중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일반수용비>사업추진비	간담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 소요되는 간식비, 식사비 ※사업 준비 과정에서 단순 회의를 위한 간식비, 식사비 편성 불가
	일반수용비>기타운영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 공연 티켓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국내여비>[국내] 교통 및 체제비	선박, 숙박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지하철, 버스비, 택시비 사용 불가)

※ 숙박비 1박 최대 70,000원

※ 식비 집행 불가

※ 공연 티켓비(기타운영비) 집행

3. 변경 안내

사업수행시에 사업일수/횟수, 사업장소, 총사업비 등이 변경조치기준표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사업규모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아래 변경조치 기준표 참조)

【 변경조치기준표 】

변경내역		변경정도	조치사항	비 고
사업주체	사업주최자	사업주최자의 실질적 변경	지원금 취소	
사업일정	사업일수	-총 사업일수 및 사업 횟수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사업참관 횟수, 계획상 예정되었던 문화예술 활동 등) - 계획상의 숙박 일수의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지원금 취소	
사업일시	개최시기	안내된 진행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사업비가 지원신청시의 6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단, 지원신청당시의 금액과 최종선정금액이 큰 폭으로 조정되었을 경우 예산 비율에 따라 총사업비 편성 가능)	지원금 취소	자부담이 60% 이상인 경우 제외
사업내용	사업형태	타 행사의 일부로 귀속되는 등의 변경	지원금 취소	
	결과물	크기 및 수량이 50% 이상 축소되는 경우 (책자 발간 부수 등)	지원금 취소	
사업수행	사업포기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포기(사업조정기간 이후)	익년도 행정심의에 반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원사업 심의에 반영	

4. 정산 안내

【 원천징수 제도 】

- 상대방에게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분류	세율	비고
사업소득	3.3%(주민세 포함)	지급액수와 상관없이 납부
기타소득	8.8%(주민세 포함)	125,000원 초과 시 납부 125,000원 미만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사업소득-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ex. 무용수가 무용수로 참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비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ex. 무용수가 강연자로 참여하는 경우)

<예시>

출연료가 300,000원인 경우 원천징수 금액 계산

- 사업소득인 경우

출연료 총금액	원천징수 납부금액			출연자 실지금액
	사업소득세(3%)	지방소득세(0.3%)	계	
300,000	9,000	900	9,900	290,100

- 기타소득인 경우

출연료 총금액	원천징수 납부금액			출연자 실지금액
	사업소득세(8%)	지방소득세(0.8%)	계	
300,000	24,000	2,400	26,400	273,600

⇒ 출연자에게 세금총액을 제외한 실지금액을 지급

⇒ 원천징수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신고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 】

-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세무서 (국번 없이 126)

세무서명	연락처	관할구역
남인천 세무서	032-460-5200	남동구, 연수구
북인천 세무서	032-540-6200	부평구, 계양구

세무서명	연락처	관할구역
서인천 세무서	032-560-5200	서구
인천 세무서	032-770-0200	동구, 중구, 남구, 옹진군

● 직접 방문시

1. 관할 구역 세무서 소득세과 방문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 방문하여 납부
 4. 해당 원천세액 납부 영수증은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5.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의 경우, 신고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수령
-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월별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 * 인터넷으로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와 위택스에 문의 (문의 전화 번호 : 홈택스 126, 위택스 110)

5.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 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으로 2020.12.10.부터 시행되었으며, 예술인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구분	적용 제외
- 근로자가 아니면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 본인이 직접 노무를 수행하는 - 65세 이하 예술인	일반예술인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계약상 소득 금액)
	특정 사업주와 1개월(20일 이상)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단기예술인	
	단기간(1개월 미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공연 영상 제작 등 단기간 참여 예술인	

- ※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님
- ※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계약 총일수)×30

예 시	예술인 홍길동이 사업주 00예술단체와 2021.3.1.~4.30.(2개월), 200만원 계약 >> 월평균소득 : (2,000,000원÷61일)×30일 = 983,606원 >> 1개월 이상 계약,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일반 예술인'으로 당연가입 대상임
	예술인 김산들이 사업주 □□발레단과 2021.3.1.~4.30.(2개월), 100만원 계약 >> 월평균소득 : (1,000,000원÷61일)×30일 = 491,803원 >> 1개월 이상 계약으로 '일반 예술인'이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으로 당연가입 제외대상임

- 피보험자격별 관리 및 보험료 부과/산정

피보험자격	신고	월보험료 산정	고지납부
일반 예술인	처음 노무를 제공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한번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월평균보수(총 소득-25%)×1.6%	국민건강 보험공단
단기 예술인	노무를 제공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일보수의 월 합계액×1.6%	

- 보험료율 : 실업급여요율 1.6%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50%씩 균등 부담 (사업주 원천공제)
- 일반예술인 부과기준 보수 : 총 소득(총수입금액) - 20% 공제
- ※ 단 부과기준 월 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시에는 기준보수를 80만원으로 함

- 납부 : 매월 10일(다음달)
- ※ 취득일 : 노무제공 개시일 / 상실일 : 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
- ※ 관련 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고용보험(단기예술인) 노무제공 내역 확인신고서

【 신고 및 납부방법 】

- 관련 기관 안내

구분	주요업무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전담부서	02-2097-925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1577-1000
국민연금공단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등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서식 접수	063-711-7800

- 신고 및 납부 관련 서식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에서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 집행 증빙서류에 따른 유의사항 】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에는 구체적인 단가 산출 또는 원가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제출가능(단,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일시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온라인 가상계좌 거래 시, 제출자료 사전 확인하여 진행 (카드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등)
- 계산서는 면세사업자나 '부가가치세법 1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발급 가능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 유형 확인 필요)
- 수기(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 부적합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18조(보조금 사용방법) 】

- ① 보조금 사용 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치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 ②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 1항과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사항이 미비한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 사업자 유형별 지출증빙서류 수취 가능 여부 】

구분	고유번호증	일반과세자 겸영업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X	○	X	제도없음
전자계산서	X	○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맹 시 가능	○	○	

【 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 제출 】

- 지원사업 수행으로 발행한 수익금은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익금은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함 (단, 수익금을 해당 지원사업에 재투여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됨)
-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금 발생 내역 및 발생한 수익금 내역을 사업에 재투자하여 집행한 내역을 작성하여 정산보고 시 제출